

2026년 제1회 일반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 일정 변경 공고

대구교도소에서는 일반임기제 공무원(4급,의사)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면접시행일 : 기존['26. 7. 17.(금)] → 변경일 [26. 7. 20.(월)]

2026년 6월 26일
대구교도소장

1 임용예정인원 (1개 직위, 총 2명)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의무	일반임기제 4급, 의사 (과학기술서기관)	2명	계약일로부터 2년(연장가능)	대구교도소 의료과 (대구광역시)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임용예정직무

지원코드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의무	일반임기제 공무원 (4급, 의사)	일반직 4급 (일반의무)	○ 수용자의 건강진단, 질병치료 등 의료업무 ○ 교정시설의 위생업무 및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21753호)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6250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5065호)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210호)

4 응시 자격 [적용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일]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조에 따라 제74조(정년) 적용 제외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자격 요건 [적용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일]

임용예정직급	자격 요건
일반임기제 4급, 의사 (과학기술서기관)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6년 이상 경력자

※ 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은 "붙임2" 참조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 ※ 경력(재직)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되어야 하며, 시간제 근무를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력이 모두 인정되었다라도 검증단계에서 시간제 경력이 확인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면접시험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관련분야 경력은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소극적 서류전형) 응시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 심사하여 적격·부적격을 판단
- (적극적 서류전형) 응시인원이 6명 이상(5배수 초과)인 경우 평정 요소별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5명 선발

구 분	평가 기준	비 고
공통사항	[자기소개서 평가] · 지원동기의 타당성, 내용의 독창성·논리성·충실성, 인성·가치관·대인관계·조직구성원으로서의 태도 등을 종합평가	· 전형위원별 평가점수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 담당예정업무에 대한 이해도 및 직무수행계획 내용의 충실성과 적실성	
경력기간	[채용 직급별 관련분야 근무경력 평가] · 응시자격요건(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 분야 6년 이상) 충족이후 관련 분야 근무 경력	· 연차별 차등

나. 면접시험

- 면접방법 : 개별면접
- 인성·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위원이 4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 ※ 4개 항목의 평정요소 : ①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2차 시험(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위원의 과반수가 4개 항목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4개 항목 중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처리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제3항)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등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6. 6. 15.(월) ~ 6. 26.(금)	'26. 6. 23.(화) ~ 6. 26.(금)	'26. 7. 10.(금)	'26. 7. 20.(월)	'26. 7. 31.(금)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6. 6. 23.(화) ~ 6. 26.(금), 0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처 : 대구교도소 총무과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빈로 204 (우편번호 42902)
- 전화번호 : 053)430-1617, 1618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법무부 홈페이지 「채용정보」(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에서 양식 파일 내려 받아 사용(양식 임의변경 금지)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등기편 접수시 겹봉투에 ‘일반임기제 의무직 공무원 응시원서 제출’으로 표기)

※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응시자 휴대폰 SMS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당일 교부

나. 제출서류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별지서식 제1호
	2. 응시원서 1부	○ 별지서식 제2호
	3. 이력서 1부	○ 별지서식 제3호
	4. 자기소개서 1부	○ 별지서식 제4호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지서식 제5호
	6. 의사 면허증 사본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 별지서식 제6호
	8.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7호
	9. 자격요건 관련 경력 증빙서류 사본 1부	○ 별지서식 제8호(참조)
	10. 학위증명서(위원 위촉 시 제척, 기피 사유 확인용) 1부	
	11.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성만 제출
	12.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13. 소득금액 증명원(국세청 발행)	
개별사항	14. 수료증명서 또는 전문의 자격증 사본	○ 해당자에 한함

다. 유의 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별지서식 제9호)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별지서식 제10호)
-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6. 7. 31. ~ '26. 8. 31.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6. 8월 중 임용예정(합격자 발표 시 임용예정일 공고)
- 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2년(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 채용직위 연봉 한계액

구 분	2025년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상한액	하한액
일반임기제 4호	-	70,490

-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상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외 급여 지급
- (신규임용자 연봉책정) 우수 민간인재 유치가 필요한 직위에 대해 각 부처에서 민간에 준하는 수준의 연봉책정도 가능하도록 연봉특례 제도 신설에 따라 2024. 1. 1.이후 신규임용되어 최초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 신규임용일을 기준으로 별도 상한 없이 연봉책정 가능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단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9 안내 및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주최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민원증명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증명발급을 신청하여 PC에서 프린터로 출력하는 **민원증명 서비스**입니다.

- 현 서비스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4조2의 규정을 따릅니다.

민원증명

- 국세증명신청
- 1. · 사실증명신청

민원증명 원본확인 (수요처 조회)

문서위변조방지 및 처벌안내

민원증명 처리결과 조회

민원증명 이용시간

-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등 연중무휴 24시간
-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연중무휴 08:00 ~ 22:00
- 사실증명발급신청 연중무휴 09:00 ~ 24:00

민원증명 이용절차

- 01 홈택스 로그인
- 02 민원증명 신청진행
- 03 민원증명 처리결과
- 04 발급완료 후 프린터 출력

민원증명 신청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 사업자등록증명
- 휴업사실증명
- 폐업사실증명
- 납세증명서(국세관납증명)
-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 2. · 소득금액증명
-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연금보험료등 소득 세액 공제확인서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증명사업장증명
- 모범납세자증명
- 국세납세증명 조회(정부관리기관용)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 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교도소 총무과(053-430-1617, 1618)로 문의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585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이하 생략)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대구교도소	의료과

주요 업무	○ 수용자의 건강진단, 질병치료 등 의료업무 ○ 교정시설의 위생업무 및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	---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윤리의식(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 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 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기술적 전문지식, 전략적 사고력, 대인관계
-------	---

필요 지식	○ 기초의학이론과 보건의료 규제기준 및 지침 관련 지식 ○ 국내외 건강보험제도 관련 지식 ○ 임상경험에 기반한 전문의료 지식 등
-------	---

응시 자격 요건	관련분야 : 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등 의료 분야	
	자격증	○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6년 이상 경력자
우대요건		○ 응시자격요건(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 분야 6년 이상 경력)"충족 이후" 관련 분야 근무경력

붙임 3

제출서류 안내

응시원서에 포함되어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직위별로 응시요건에 따라 필수서류가 다르므로, 직무기술서 등을 참고하여 필수사항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구 분	내 용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서식 제1호) : 필수서류	○ 별지서식 제1호 작성
2.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필수서류 ※ 정부수입인지 부착(10,000원 상당)	○ 별지서식 제2호 작성 ○ 응시수수료 - 5급 이상 : 10,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6-7급, 연구사 : 7,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8-9급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3.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필수서류	○ 별지서식 제3호 작성
4.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필수서류	○ A4 2매 이내로 작성
5.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5호) : 필수서류	○ 별도 양식 없으며 A4 요약서 1매 + A4 5매로 작성 (총 6매 이내)
6. 의사 면허증 사본 1부 : 필수서류	○ 면접 시 원본 지참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별지서식 제6호) : 필수서류	○ 별지서식 제6호 작성 - 자필 서명 필수
8.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7호) : 필수서류	○ 별지서식 제7호 작성 - 자필 서명 필수

구 분	내 용
9. 자격요건 관련 경력 증빙서류 사본 1부 : 필수서류 (경력증명서 +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 소득금액 증명서) ※ 경력(재직) 증명서 발급 시 (별지서식 제8호) 참조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함 ○ 제출된 경력 사항에 대하여만 인정함 ○ 경력증명을 위해 ① 경력증명서 + ②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 ③ 소득금액 증명서 ① ② ③ 모두 제출해야 함 ① 경력증명서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 경력증명서는 근무한 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근무부서·근무기간(년·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발급기관의 담당자 전화번호 등 반드시 기재 (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하며,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서', '4대 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 (교원 등의 교수시간)에 따라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경력은 주9시간 기준 (예 : 4년간 주20시간 근무한 경우 :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②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③ 소득금액 증명서 ▶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인터넷(www.hometax.go.kr)이나 세무서,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구 분	내 용
10. 학위증명서 사본 1부 : 필수서류	○ 전형위원 위촉 시 제척·기피, 응시요건·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11. 주민등록초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남성만 제출(병역사항 기재된 것) ※ 주민등록초본상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1통 추가 제출
12. 수료증명서 또는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사용금지)



Decide Now, Thrive Forever!

당신의 커리어 리셋,
지금 바로 그 선택의 순간입니다.



지금 행복하시나요?

당신의 다음 커리어 스텝은
공직 입찰학, 그 곳에서
확인하세요



"일을 하는데 왜 허전하지?", "퇴근은 했는데 왜 마음은 퇴사를 외치지?",
"월급은 늘었는데, 왜 행복하지 않지?"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시나요?
지금 다시 시작할 타이밍입니다.

안정과 성장, 가치와 행복을 모두 잡을 수 있는 대한민국 공직에서
당신의 다음 커리어를 키워주세요.



나의선택
공무원
경력채용시험
공고 확인하기



공무원 채용시험
알터오서의
공직의 매력
확인하기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성 명	임용예정기관	채용분야
	대구교도소	일반임기제 4급 (과학기술서기관, 의사)

■ 제출서류(총괄표)

번호	제 출 서 류 명	필수여부	제출유무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필수	☐
2	응시원서(수입인지 부착)	필수	☐
3	이력서	필수	☐
4	자기소개서	필수	☐
5	직무수행계획서	필수	☐
6	의사 면허증 사본	필수	☐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필수	☐
8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필수	☐
9	자격요건 관련 경력 증빙서류 사본	필수	☐
10	학위(학사, 석사, 박사) 증명서 사본	필수	☐
11	주민등록초본 (남성만 제출, 병역사항 포함)	필수	☐
12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필수	☐
13	소득금액 증명원(국세청 발행)	필수	☐
14	수료증명서 또는 전문의 자격증 사본	해당자만	☐

※ □에는 서류제출여부를 √하여 제출하시고, 증빙서류(사본)에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하고 스테이플을 제거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응시자) 성명 : (서명)

<별지서식 제2호>

(앞 면)

응시원서

대구교도소장 귀하

본인은 2026년 제1회 대구교도소 일반임기제공무원(4급, 의사)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원서			
응시직급 및 분야			
응시자격			
※응시번호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소	(우)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응시표 (2026년 제1회 대구교도소 일반임기제공무원(4호, 의사)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			
응시직급 및 분야			
응시자격			
※응시번호		성명	(한글) (한자)

주의사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대구교도소 총무과에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 『응시원서』 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작성요령

- ① 응시직급 및 분야 : 과학기술서기관(일반임기제, 4급), 일반(의무)
 - ② 응시자격 :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6년 이상 경력자
 - ③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④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⑤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⑥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 ⑦ 정부수입인지 : 5급 이상은 10,000원, 6·7급/연구사/전문경력관은 7,000원, 8급 이하는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부착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② 응시분야 : 일반(의무)
- ③ 응시직급 : 과학기술서기관(일반임기제, 4호)
- ④ 응시자격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예. 공공A분야 경력 요건 중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응시하는 자가 관련 직무분야에서 13년의 경력이 있을시,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8년의 경력은 '나.응시자격'의 경력란에 기입하고,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5년의 경력은 '다.우대요건'의 경력란에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기간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를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전임(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비전임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 예시) 통상근무시간이 주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기재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명·자격증 취득예정일·자격 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자 기 소 개 서

성명		응시직급 및 분야	
----	--	-----------	--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직무수행 계획서

성명		응시직급 및 분야	
----	--	-----------	--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분량은 요약서 A4 1매 + A4용지 5매(총 6매 이내)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병역사항,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 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 (서명)

대구교도소장 귀하

경력(재직) 증명서(예시)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 소																
경력 사항	① 근무기간		근무기관 (부서)	직위 (직급)	담당업무 ②	근무형태 (전임/비전임) ③	비고 (주 근무시간 기재)										
	부터	까지															
	(예시)		00병원 (내과)	과장	내과 진료	전임	주 40시간										
	'10.5.1	'14.5.31															
	총 3년6월 (42개월) ※ 휴직사유 및 기간 기재																
						비전임	주 20시간										
상별 사항	포 상			징 계													
	년월일	종 류	시행청	년월일	종 류	시행청											
위 와 같 이 증 명 합 니 다.																	
2026년 월 일																	
증명기관명 :				<table><tr><th colspan="2">발 급 자</th></tr><tr><td>소 속</td><td></td></tr><tr><td>직 급</td><td></td></tr><tr><td>연락처</td><td></td></tr><tr><td>성 명</td><td>(인)</td></tr></table>				발 급 자		소 속		직 급		연락처		성 명	(인)
발 급 자																	
소 속																	
직 급																	
연락처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① 근무기간 : 웅시자격요건 충족 후 관련분야 근무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 ② 담당업무 : 근무기간 동안 구체적 업무 기재 (예) 응급실 근무, 내과 진료, 영상의학 등 구체적으로 기재 ③ 근무형태 : 상근/비상근 여부 구분 ※ 발급자 및 기관대표자 명의 반드시 날인																	

<별지서식 제10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 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구교도소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
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
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